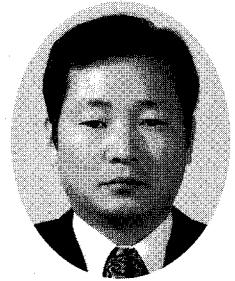




자사제품 자체관리 통해 스스로 책임져야



윤재혁
농업과학기술원 농약품질과장

품목등록신청서 수시 접수 편의 도모
품목 등록시 성적서 사본 제출도 가능

1996년 12월 7일자로 개정 농약관리법이 시행됨으로써 농약관리제도가 품목고시제에서 품목등록제로 전환되었고 농약관리법 관련 하위규정을 개정하면서 종전의 규제사항을 많이 완화하였으며 행정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품질관리를 자율화하기 위해 수차례 업계 및 관계관 협의를 거쳐 법으로 개정할 내용은 추후 추진하기로 하고 고시나 행정조치가 가능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 조치한바 있다. 이와함께 농약 생산업계와 관련 업체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규정은 계속적으로 검토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하고, 고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품목등록시 성적서 사본 제출 가능

농약품목등록신청시 시험 성적서 원본만을 제출토록 하던 것을 외국 시험 성적등 원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주재국의 한국대사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은 것과 공증 받은 시험성적은 사본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품목 등록시험 관리에 업계 참여

농약품목등록 시험기관에 대한 등록시험관리를 위해 시험수행 기간에 현지를 방문 하여 시험의 적정 수행여부 등을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점검·지도하던 것을 주관은 농과원이 하되 업계 대표(협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농약의 등록관리

품목등록 신청서 접수기간

농약 품목의 신규 및 변경등록 신청서는 매 분기 말에 접수하던 것을 민원인의 편의와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서 수시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품목등록시 경시변화 시험점수 완화

농약경시변화시험에 대한 시료 점수를 1년에 10

개이상 시험하도록 규정된 것을 분석점수에 관계 없이 시험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완화하였다. 시험 성적도 상온에서 약효보증 기간 동안 시험한 성적서만을 인정하였으나 확대 시험 성적(54℃±2℃)도 인정하되 등록후 약효보증기간 내에 시험한 상온시험 성적서를 등록후에 제출토록 보완하여 민원인의 등록시험 기간을 단축시켰다.

제조처방서 변경전에 검토원 제출가능

농약 제조처방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의무적으로 약효 및 약해시험 성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조처방서 변경전에 미리 변경내용에 대한 검토원을 제출하여 농과원의 검토 결과 불필요한 시험은 생략하고 필요한 시험만 실시토록 함으로써 시험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 완화하였다.

농약의 품질관리

자체검사시 생산모집단 크기 자율화

농약의 검사방법을 개정 고시(농과원고시 제 1998-1호, '98.6.20)하여 농약의 자체검사 및 신청 검사시 생산모집단별로 적재 크기 및 간격이 4열 2m이내와 70cm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자율화하였다.

신규 등록원제 생산계획 보고 폐지

신규 등록원제를 생산할 경우나 최초 수입시 원제 사용개시 10일전에 생산 계획서를 농과원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계획서 제출 의무를 없애고 자체검사 완료후 농과원에서 필요시에 발취하여 검사하도록 하였다.

자체 품질관리 확인지도 완화

농과원에서 정기적으로 생산실적이 있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농약 제조공장의 자체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품질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만 점검하도록 완화하였다.

유통농약 자체검사 결과 보고의무 폐지

사후 품질보증 차원에서 시중 유통중인 자사제품에 대한 품질확인을 하기 위해 연간 1,000점 정도의 자사농약 유통 제품에 대해 농과원에서 회사별로 계획을 통보하고 제조회사는 유통농약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분기별로 그 결과를 농과원에 보고토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보고 의무조항을 없앴으로써 자사제품에 대하여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체 품질관리하는 제도로 자율화하였다.

신규 농약 분석방법 추가 개정 고시

Cyprodinil 등 21개 품목에 대한 신규 분석 방법을 추가 고시하여 농약의 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관리를 유도하였다.

농약공시품 발취수량 축소 조정으로 비용 절감

농약의 이화학적 검사, 유해성분 및 역가검사 공시품 수량을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나 농약의 등록시험 기준과 방법에 준하여 발취하던 것을 직권 검사용 시료에 한해 제형별로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시품 수량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발취 수량을 절감함으로써 경비 및 자원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신규 생산품목 품질관리기준 보고 폐지

신규 생산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등록후 처음 제조하기 전에 자체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품목별로 농과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품질관리의 자율성 제고와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보고 의무 규정을 폐지하였다. **농약정보**